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10. 8.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 9. 27.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4. 9. 30.

다. 상정일자 : 제271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4. 10. 8.)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복지정책과장

가. 제안이유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을 확대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용품 지원 및 사망위로금 관련 조문 정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및 보훈대상자 급식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 추가(안 제3조 제7호)
- 2)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서비스 신설 (안 제6조 제11호)
- 3) 국가보훈대상자 급식지원서비스 신설 (안 제6조 제2~3항)
- 4)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안 제10조의 2)

3. 검토보고 [장흥용 전문위원]

- 본 개정조례안은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된 개정조례안으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을 확대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용품 지원 및 사망위로금 관련 조문 정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및 보훈대상자 급식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3조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하였고,
 - 안 제6조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장례용품 지원 및 급식지원 조항을,
 - 안 제10조에서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음.
- 조문별 주요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 안 제3조의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대상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대우를 하는 재해사망 및 부상 군경, 공무원 등으로 우리구에는 6월 말 현재 45명이 있으며 18개 구에서 보훈보상 대상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안 제6조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장례용품 지원(11개 구 시행) 및 급식지원 서비스를 신설한 것이며, 안 제10조의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2024년 9월 현재 서초구(7만원), 동작구(6만원), 용산구(7만원)에서 시행하고 있음.

○ 종합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급식 지원 및 사망 시 장례용품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매달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운영 중인 동 조례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 개정안이라 판단됨. 특히 타 국가보훈대상자와 달리 유족 지정 제도가 없는 참전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복지향상을 위해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신설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이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배우자 수당 등 연간 198,300천원(구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다만, 안 제6조 제2항 내지 3항의 급식지원 부분과 관련하여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다고 하였으나 대상자 선정 및 수요도 조사, 운영 가능한 식당, 자원봉사자 운영 등 제반사항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꼼꼼히 살펴 조례개정 취지에 맞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자료

1. 관련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개정 2015. 12. 22., 2020. 3. 24., 2023. 3. 4.>

1.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3. 재해사망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재해부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2.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등록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2. 연간 소요예산

계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확대	명절위로금	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 (현품지급)	배우자 수당
산출내역	37,800천원 (45명×7만원×12월)	4,500천원 (45명×5만원×2회)	30,000천원 (100명×3만원)	126,000천원 (150명×7만원×12월)

3. 마포구 보훈대상자 지원현황

□ 보훈사업 지원대상자 현황

- 추진근거: 국가보훈기본법,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 사업대상: 국가보훈대상자 3,800여명
- 보훈대상자 현황(2024. 5월 기준)

(단위:명)

구분	계	독립 유공자 유족	참전 유공자	전상·공상 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관련	무공·보국 수훈자	특수임무 유공자	4.19, 5.18 관련	기타 보훈 대상자
인원수	4,546	83	1,279	1,550	217	857	17	39	511

※ 중복자격건수: 845건(중복자를 제외한 실인원: 3,709명)

- 사업내용: 보훈대상자 생활안정 지원 및 보훈문화 확산 등
- 사 업 비: 2,641,279천원(구비 100%)

□ 세부 지원 내역

- 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 지원

구 분	구 비					시 비			
	보훈 예우 수당	참 전 예 수 당	독립유공 위문금	사 망 위 로 금	명 절 위 문 금	보훈예우 수당	참 전 예 수 당	생활보조 수당	독립유공 생활지원 수당
지급시기	매월	매월	8월	수시	설·추석 (2회)	매월	매월	매월	매월
예상인원 (명)	1,950	1,310	80	100	3,250	100	1,200	200	140
지원액 (1인)	6만 원 (1만원 인상)	6만 원 (1만원 인상)	10만원	20만원	회당 3만원	10만원	15만원	20만원	20만원
예산액 (2024년)	14억 4,400만원	9억 4,300만원	800만원	2,000 만원	1억 9,500만원	1억 2,000만원	21억 6,000만원	4억 8,000만원	3억 3,600만원

○ 보훈행사 지원 및 개최

구 분	제2회 호국보훈 감사축제 개최	현충일 참배 지원 (참배객 수송)	6.25 참전유공자 위문사업 지원	독립유공자 위문사업 지원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행사월	2024. 6월(예정)	2024. 6. 6.	2024. 6월	2024. 8월	2024. 6월
예상인원	1,000명	200명	200명	150명	9개 단체
예산액	7,000만원	450만원	1,000만원	600만원	900만원
행사내용	호국보훈 기념식, 위문공연, 전시·체험부스 운영	현충원 참배 유족 수송 지원	6.25참전유공자 위문행사 (보훈회관 주최)	독립유공자 위문행사 (보훈회관 주최)	단체당 100만원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